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10.15)

#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용]

## 목 차

1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5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0. 05

**2. 제안이유**

- 군민자전거( ‘그린씽’ )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따라 군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 자전거에 대한 주인의식고취 및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제3항, 별표)

구 분		회 원	비회원	비 고
기 본 사용료 (3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권 : 20,000원</li> <li>▪30일권 : 3,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권:1,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사용료의 사용 시간 범위에서 반복 이용은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li> </ul>
추 가 사용료	3시간 초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당 5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당 1,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li> </ul>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9.12. ~ 10. 0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자전거(그린씽)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기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3조 제3항**, 별표에서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사용 요금을 정함

- **기본 사용료(3시간 이내)**

- 회 원 : 1년권 20,000원, 30일권 3,000원
- 비회원 : 1일권 1,000원

- **추가 사용료(3시간 초과)**

- 회 원 : 시간당 500원
- 비회원 : 시간당 1,000원

- ☞ 기본사용료의 사용시간 범위에서 반복이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미만은 1시간으로 봄

- **제4항**에서는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 **안 제23조** 제1항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인의식고취로 자전거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0. 05

## 2.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수입을 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운영협의회 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 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등

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각 1명씩을 둠

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간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바. 협의회 재정운영 및 회계연도에 관하여 정함(안 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37,800천원(2013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8.28. ~ 09. 1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기준으로 협의회는 관할지역 해당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여성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회 정관에 규정할 내용으로 정관에는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회 기능으로 협의회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그 밖에 협의회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회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각 1명씩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단 감사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함) 임원 및 위원이 품위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회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수입을 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시행2011.6.21] [법률 제10653호, 2011.5.19. 타법개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0. 05

## 2. 제안이유

- 도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공포(2012.6.21.)되어 도내 동일한 행정처분의 필요에 따라 현행 2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금연구역 표시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 표지판 및 안내판 ⇒ 안내표지판
- 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함(안 제10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20,000원 ⇒ 30,000원으로 조정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9.03. ~ 09.2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공포(2012.6.21.)됨에 따라 도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통일하도록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표지판 및 안내판 ⇒ 안내표지판

-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도내에 통일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2호, 2011.12.31, 일부개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지방자치법」 제24조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칙 제2998호, 2012.6.21, 제정]

제5조(과태료 부과)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0. 05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 기간 및 병원 진료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노인요양병원 업무 범위를 변경함(안 제3조)
  - 치매환자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 나. 위탁기간을 변경함(안 제4조)
  - 10년 이내 ⇒ 5년 이내
-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조문과 용어 정비함
  - (1) 「지방자치법」 제135조, 「의료법」 제30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의료법」 제33조(안 제1조)
  - (2)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 제12조)
  - (3)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안 제3조,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8.13 ~ 09.02)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진료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의 업무 중 “치매환자”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조정함(단서 규정을 개정함)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갱신 할 수 있다

○ 이 개정 조례안은 노인요양병원의 업무 범위를 “치매환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27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가. 현금
  - 나. 유가증권
  -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0.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0. 11

### 2.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과 위탁어린이집 시설장의 임기를 정비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
  -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나. 공립어린이집 직영 및 위탁 원장의 임기를 변경함(안 제14조의2)
  - 직영 및 위탁 동일하게 → 5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적용
- 다.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21조)
  -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준용

라. 관련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함

- 시설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종사자 ⇒ 보육교직원, 직원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마.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별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08.20. ~ 09.10) 결과 : 다음내용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공립 어린이집 원장 일동	○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 현행 시설장을 맡고 있는 자들은 임용 당시 현행 조례만을 보고 계약을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보호 원칙에 합당하다고 사료됨.	○ 시설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잔여근무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음.	미반영
	○ 평등원칙에 위배 -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정년은 57세에서 60세로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직영 및 위탁 원장의 임기를 10년만 보장한다는 조례는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 직영의 경우, 현 조례에 근무상한 연령을 명시(시설장 60세, 보육교사 57세)하고 있으며, 위탁의 경우는 계속 연임이 불분명함으로 명시가 불필요	미반영
	○ 제안사항 - 지방조례에 임기를 다한 원장에 대하여 위탁제 신청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으로 판단되며, 원장 임용 연령을 50~55세로 규정한다면 60세 정년을 맞출 수 있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장 임기제 시행으로 전체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	미반영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위탁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의 별표** 에서는 어린이집의 위치를 가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입소 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 위탁기간은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의2**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24조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시행 2012.8.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 2012.8.17, 일부개정]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별표 8의2] <신설 2012.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점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28>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생활공감 국민행복 보도 자료

 <b>국민권익위원회</b> <small>Anti-Corruption &amp; Civil Rights Commission</small>	자료배포	2010. 4. 23.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우주연 ☎ 02-360-6631
	■ 총 4쪽	

2010. 4. 23(금)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사회복지시설 편법·부당 운영 근절대책 추진 권익위,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은 1회로 제한, 재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
- ◆ 보조금을 부당·위법사용한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중대 사항 위반시설은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
- ◆ 재정능력 없는 법인의 전입금 총당 편법 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 강화**
-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전면 도입**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28>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